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A Plan for Classification of Public Record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the Joseon Preserved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이 승 일 (Lee, Seung il)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조직·기능
분석과 기록분류 |
| 2.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
방법론 | 5. 맺음말 |
| 3. 조선총독부 본부의 조직 연혁 | |

< 초 록 >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보존 관리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 문서과가 보관하고 있던 14,000여권을 미군정을 거쳐 한국정부가 인수받은 후, 각급 기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조선사편수회 문서들과 대검찰청에서 연구자료로 대출해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관련 문서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기록원이 가장 많은 공문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기록물은 소장 기관의 특성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소장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으나 기록물의 분류는 소장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해당 기록을 생산한 기관과 그 기록의 특성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공문서에 적합한 표준적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는, 공문서가 생산될 당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직함으로써, 해당 공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과 법무국의 업무분장표에 기초하여 대-중-소-시리즈-기록철의 순으로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철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앞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위한 분류체계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기구와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과 사무분장 수준의 조사보다는 係 업무분장표의 지속적인 발굴과 기록철의 증가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하게 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要語 : 분류, 조선총독부, 공기록, 출처, 출처주의

*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blueat89@hanmail.net)

접수일: 2006년 11월 14일 최초심사일: 2006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18일

<ABSTRACT>

Public records, produc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re preserved and managed at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as well as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ince the Korean government received approximately 14,000 files from the Government-General through the provisional U.S. military government,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has preserved the records collected from government agencies on every level. While some documents are kept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is currently managing the largest collection of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

Since these public records are scattered over various institutions, they are variously organiz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holding institutions. However, they should be uniformly classified by the agency which produced them and their characteristics, no matter where they are kept. It is very urgent to establish a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this particular collection of official documents, which could be shared by various holding institutions..

In this research, a classification system is proposed to represent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official dutie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In order to establish a well-organized classification system,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comprehensively the organizations and function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Key words : Classification of Public Records, Government-General of Joseon, Public Records Management, Principle of Provenance

1. 머리말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보존 관리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 문서과가 보관하고 있던 14,000여권을 미군정을 거쳐 한국정부가 인수받은 후, 각급 기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조선사편수회 문서들과 대검찰청에서 연구자료로 대출해 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관련 문서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기록원이 가장 많은 공문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기록물은 소장 기관의 특성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조직 혹은 기능분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고서’로 취급하여 조선시대의 經·史·子·集 분류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목록집도 발간한 바 있다.¹⁾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문서들은 편의상 보존, 발견, 구입, 진열, 기부, 고적조사, 국유림, 지정, 도면, 지도, 신문보도, 기타 등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다.²⁾ 이처럼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소장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으나 기록물의 분류는 소장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해당 기록을 생산한 기관과 그 기록의 특성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에 관한 연구는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가 공문서들을 어떻게 분류하였고, 그 분류가 일본본국의 공문서 분류체계와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추적한 연구들이다.³⁾ 이 연구들에 의해서 조선총독부의 공문서는 조직별, 기능별로 분류되었고 계층적 질서에 따라 분류된 점이 밝혀졌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분류 방식은 일본 본국의 내무성 분류체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현대

-
- 1) 국사편찬위원회, “고서목록”, 1983. 이 목록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와 조선총독부 중추원 기록 등이 동일한 분류체계 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 2) 김도형, “일제하 총독부 박물관 문서와 관리체계,” 『기록학연구』 3(2001), 126.
 - 3) 박성진,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방식,” 『기록학연구』 5(2002); 배성준,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체계의 복원,” 『기록학연구』 9(2004).

기록학 방법론에 의해서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 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있다.⁴⁾ 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 기록물 분류를 위하여 기능분류에 따라서 기능분류표 작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후 조선총독부 공문서 목록집으로 출판되었다.⁵⁾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정보 뿐만 아니라, 그 공문서가 어떠한 맥락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록은 그 기록을 생산한 부서와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좀 더 정확한 해석과 균형 있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록의 계층적 분류는 해당 기록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기술(記述)의 기초작업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표가 존재한다면, 해당 분류표를 참조하여 분류체계를 작성하면 되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분류표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분류표를 작성해야 한다. 조선총독부 공문서 전체에 대한 분류체계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 글에서는 법무국 문서의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조선총독부 기록물 분류의 방법과 대안 모델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조선총독부 법무국 문서는 법무 행정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입법 관련 문서도 일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통치기구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리적인 기록물의 정리와 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관의 연혁과 업무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수적이다.

2.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 방법론

일반적으로 기록물은 도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다.⁶⁾ 도서의 경우에는

-
- 4) 설문원,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기능분류체계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
 - 5)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한울: 2005);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조선총독부 공문서 다계층 상세목록집』(한울: 2005).
 - 6) 기록의 정리 혹은 분류는 “기록물을 출처의 원칙과 같은 기록관리 원칙에 맞추어 기록물을

주제에 따른 분류가 일반적이지만, 기록물은 해당 기록철의 주제(내용)보다는 기록물을 생산한 조직이나 그 조직의 기능에 크게 의존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집약한 것이 ‘출처주의’와 ‘원질서존중’이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기록물의 분류가 해당 기록철의 내용이나 주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구조와 업무 활동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기록학에서 분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출처주의는 “특정한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은 타 기관의 기록과 섞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기록물의 생산기관별로 기록들을 대분류해야 함을 의미한다. 원질서존중의 원칙은 기록물은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활동과정에서 부여받은 순서와 지시대로 보존되어야 한다”⁷⁾는 것으로 출처주의가 내적으로 전개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학 원칙은 기록물을 생산 맥락에 조응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관리적 측면 뿐 아니라, 이용자가 기록물을 접근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근대 기록학을 최초로 정립한 쉘렌버그도 분류를 조직적 분류, 기능적 분류, 주제별 분류 등으로 구분하고 공기록은 조직 및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에 의한 분류는 이와 같은 규칙의 예외로 설정하고 있다.⁸⁾

그러나 최근에는 출처를 기록을 생산한 조직 혹은 개인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기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기능적 출처 개념은 최근의 국가조직이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되기 보다는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조직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⁹⁾ 이와 같은 기능적 출처 개념

계층별로 조직화하는 지적이고 물리적인 처리과정을 말하며, 여기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는 포장, 라벨 부착, 서가 배치가 포함되며, 소장 기록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SAA 1991) (설문원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기능분류체계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에서 인용 그러나 이 글에서는 파일링, 라벨링, 보존상자 편성 등의 물리적인 조직화보다는 논리적인 조직화의 의미로만 국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7) Fredric. M. Miller,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진리탐구: 2002), 44(조경구 옮김).
 8) Schellenberg Theodore R. 「현대기록학개론」(진리탐구), 62-67(이원영 옮김).
 9) 애드ريان 커닝햄(이승익 역), “호주의 공공기록관리 전략,” 『기록보존』 15(2002); 설문원,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기능분류체계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

은 출처주의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 국가조직의 심각한 변동을 반영한 현실적 대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출처를 기능으로 이해하여 분류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에서는 1980 년대에 총독부 문서들을 분류하여 목록집을 발간한 바가 있다.¹⁰⁾ 이 목록집은 국사편찬위원회나 국립박물관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기록물을 분류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는 국가기록원의 기록분류 현황이다.

<표 1> 국가기록원의 총독부 문서과 이관문서 분류¹¹⁾

구분	분류명	구분	분류명
총독 관방	인사	법무국	법무
	외사		행형
	회계	식산국	상공
재무국	이재		광무
	사계		산금
	세무		연료
내무국	지방행정		농림국
	토목	수리조합	
	건축	미곡	
	노무	임정	
학무국	학무	경무국	
	사회교육		경무
	편집		위생

비고: 이후 김형국은 재판소를 대분류로 하고 재판소 하위에 행형기록을 추가하였다

국가기록원의 분류는 조직분류를 기반으로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각국의 조직명을 그대로 대분류명으로 채택하고 국의 과명을 하위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는 조선총독부 조직이 계속 변화하였기 때문

10) 정부기록보존소, 「정부기록보존소문서 총괄목록 2:이조, 일정문서」(1981); 정부기록보존소, 「정부기록보존소문서 색인목록: 일정편」(1982).

11) 김형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조선총독부문서 소장현황 및 내용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7(2001). 재판소는 조선총독부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본부 기록을 위한 분류표에 집어넣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재판소 하위의 행형기록과 법무국 하위의 행형 간의 차이도 드러내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에 1930년대말에서 1940년대 무렵의 조선총독부 본부의 局과 課名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에서는 8개 대분류, 26개 중분류를 수행하고 있는데 각 분류명을 보면 해당 조선총독부 본부의 조직명을 그대로 분류명으로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조직명과 해당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명칭이 중복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조직의 명칭이 곧 기능의 명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중분류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나 합리적인 단위 설정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것은 당시 조선총독부 局 산하의 모든 課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분류는 局과 課 조직을 계층적으로 연결하여 분류한 것이기는 하지만, 식민지 시기 전체 기능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총독 관방의 중요 기능 중에서 법안 심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심의실’의 기능은 분류 항목에 없다. 위 분류표는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일 수는 있으나, 분류표 자체적으로는 설정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소기능 하위의 각 기록철들을 시리즈로 묶어주는 절차도 없어서 사실상 기록물 조직화의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도표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는 국가기록원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신의 기록학 이론을 수용하여 새로운 분류목록집을 발행하였다. 아래의 도표가 그것이다.¹²⁾

<표 2> 한국국가기록원의 분류표¹³⁾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방	비서	비서일반	재무	이재	이재일반	학무	학무	학무일반
		기밀문서			국채·차입금			교원
		기밀사무			화폐			학교
	인사	인사일반	자금운용	편집	기상			
		관제	금융기관		편집일반			
		관직이동	농정일반		교과용도서			
		포상	농업단체		종교일반			
		은급	농업기구		유교			

12) 이 목록집 작업에는 필자도 일부 참여하였고 당시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의 관점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13)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한울 2005).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분류표는 국가기록원과 비교하면 매우 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분류는 모두 7개로 국가기록원의 대분류보다는 1개가 적다. 그것은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목록집에서는 식산국과 농림국을 통합하여 식산 기능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이다. 중분류는 2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분류는 80개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대-중분류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국가기록연구원에서는 소분류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이다. 이와 함께 다계층 상세목록에는 각 기록들의 시리즈를 확정하여 상세 기술하고 있다. 기왕의 목록집보다는 출처별, 계층별 분류가 충실히 반영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도 대분류에서는 조선총독부局的 명칭을 분류명으로 사용하였고 중분류에서도 課名을 대부분 분류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조선총독부의 각 기능이 조직 단위로 분화·배치되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소분류에서는 과 단위 이하의 구체적인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80개의 소분류가 과연 해당 부서의 업무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국의 경우 중분류를 법무와 행형으로 구분하게 되면 법무 쪽에는 민사·형사·호적·재판소·변호사·검찰사무 등의 단위업무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지만, 해당 분류표에는 법무일반·민사·형사 등 3개의 단위업무만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행형 쪽에 재판기구·변호사·사법관 등이 편입되는 불합리한 분류가 수행되어 있다. 재판기구·변호사·사법관 등의 업무는 민사과 혹은 법무과 민사계에서 수행하던 업무였다. 그리고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에 새롭게 업무가 추가된 보호관찰, 예방구금 등의 기록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소분류 항목에 〇〇일반이라는 명칭으로 공통업무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설정이 과연 상세한 업무 분석을 통하여 공통기능을 추출한 결과인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법무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법무 대기능 하위에 법무-행형-법무일반이라는 방식으로 분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분류표가 출처주의 혹은 원질서존중이라는 기록 분류의 일반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가 조선총독

부 공문서를 포괄하는 치밀한 분류를 수행하였는가는 의문이다. 그것은 분류를 위한 기록학 방법론이 지극히 추상적인 원칙에 불과하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 동일한 원칙을 갖고 분류체계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인 분류표는 해당 조직과 기능 분석의 충실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록학 원칙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의 여부는 조선총독부 조직과 업무를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였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들은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수준의 분석만을 시행함으로써, 각 課가 어떠한 세부 업무들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대기능-중기능 정도의 분류밖에는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무국 각 과의 세부업무들을 추적하여 대-중-소-시리즈-기록철로 이어지는 분류체계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다.

다양한 기록물 분류 방식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분류의 대상과, 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기록분류의 성패는 해당 조직과 기능을 얼마나 정확히 조사 분석하였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기록학에서 기록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록을 둘러싼 조직과 사회에 대한 방대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¹⁴⁾

3. 조선총독부 본부의 조직 연혁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어 3권 분립에 입각한 국가 기관이 설립되었다. 예컨대 입법에 관해서는 제국의회, 사법에 관해서는 재판소, 행정에 관해서는 일본내각이 그 권한을 각각 행사하였으나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입법, 사법, 행정기구가 조선총독에 직속되어 있었다. 입법권과 행정권은 조선

14) 호주 DIRKS-Manual의 STEP A~B는 기록관리시스템 설계를 위한 업무활동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관의 조직 및 기능 분석을 위해서는 좋은 참고가 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김익한, "DIRKS-Manual의 실용적 적용," 『기록학연구』 8(2003).

총독이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조선총독부가 수행하였고, 재판소는 조선총독의 소속기관으로서 판사의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법에 관해서 조선총독은 재판소의 설치, 폐지,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 또한 판·검사의 임면 징계, 사무처리, 지휘 감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 지배기구는 근대국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3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행정관인 조선총독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모두 관할하는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조직 기구상으로도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재판소와 입법 및 행정조직이 엄격히 분리되지 못한 채 조선총독에 의해 통제되었다.

기록의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식민지적 특수성은 잘 드러난다. 일본본국의 경우에는 입법 문서와 사법 및 행정 문서는 성격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생산되었으나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되었다.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생산과 등록, 보존은 조선총독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별로 독립적으로 행해졌으나 소속기관장을 통한 지도 및 감독권 행사를 통한 간섭은 가능하였다.

한편 식민지 조선의 지배기구는 형식상 일본본국의 국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속된 것만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일본의 통치기구와는 별개의 체계를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식민지 조선의 입법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조선총독이 행사하였고¹⁵⁾ 일본의 제국의회는 소극적으로 조선의 입법에 관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는 일본본국의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재판소들은 일본의 재판소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재판소는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식민지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법무국이 생산한 각종 입법 및 법무 행정문서들의 분류와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일제는 한국병합과 더불어 1910년 8월 29일 식민통치의 기관 설립을 위하여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¹⁶⁾ 이 칙령에 의하여 조선에 조선총독

15) ‘1910년 8월 29일 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이 칙령은 1911년에 법률 제30호로 다시 공포되었다.

16) ‘1910년 8월 29일 칙령 제319호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

부를 설치되었고 조선총독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의 정무를 통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분간은 종전의 통감부와 소속관서를 존치시켜 조선총독에게 직무를 맡겼다. 또한 내각과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한 대한제국 소속의 기관을 총독부의 소속관서로 간주하여 정무의 집행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1개월 뒤인 9월 30일 '통치기관의 통합, 지방기관의 충실, 인원의 선택배치, 경비절감' 등 새로운 관제 시행을 위해 조선총독부관제를 공포하고¹⁷⁾,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¹⁸⁾

이에 따라 조선총독은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으로 朝鮮總督府令을 발하고, 이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2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벌칙을 만들 수 있으며, 소속 관리를 감독하고, 奏任文官의 진퇴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判任文官 이하의 진퇴는 專行할 수 있다. 또 일본 명치헌법에서 법률사항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조선에서 법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勅裁를 거치고, 임시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곧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 명령을 制令이라 한다.¹⁹⁾ 조선총독부의 조직은 친임관으로 총독을 보좌하며 업무를 통리하고 各部局의 사무를 감독하는 政務總監 아래 다음과 같이 1관방 5부제로 구성되었다.²⁰⁾

<표 3> 1910년 한국병합 직후 조선총독부 본부의 기구 현황

총독관방	무관실, 비서과
총무부	문서과, 외사국, 인사국, 회계국
사법부	민사과, 형사과, 서무과
내무부	서무과, 지방국, 학무국
탁지부	서무과, 세관공사과, 사세국, 사계국
농상공부	서무과, 식산국, 상공국

17)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4호 조선총독부관제'

18) 이하의 조선총독부 본부의 조직연혁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요약·정리하였다. 김민철, '조선총독부의 기구와 변화'(출처: www.banmin.or.kr).

19) 1911년 3월 법률 제30호

20)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앞의 직속기관 가운데 내부부, 탁지부, 농상공부는 대한제국 정부의 기구를 축소해서 그대로 존치시켰으나 學部는 내부부의 1국인 학부국으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통감부 사법청을 사법부로 개조하고, 총무부를 신설하였다. 각 부의 장을 장관이라 부르고, 국의 장에는 칙임인 국장을 두었다. 소속관서는 中樞院, 取調局, 각도, 제학교, 警務總監部(장은 경무총장), 재판소, 감옥, 철도국, 통신국, 전매국, 임시토지조사국(총재는 정무총감), 세관, 인쇄국, 營林廠, 의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증추원의 경우 1910년 9월 칙령 355호로 증추원관제를 공포,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의장(정무총감), 부의장(전 수상 이완용) 외 조선인으로 顧問 15명, 贊議 20명, 副贊議 35명으로 구성되어 舊慣調査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사법제도의 경우, 1909년 6월에 한국의 사법권을 박탈한 일제는 11월 1일부터 통감부사법청관제(장은 사법청장관)와 통감부재판소령을 공포하여, 3심 4급제의 재판소(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를 설치하고, 통감부재판소에 검사국을 병치시켰다. 일제는 한국병합 이후 통감부 재판소를 일시 조선총독부 재판소로 간주하여 존치시켰다. 그리고 10월 1일 조선총독부 관제의 실시와 동시에 제령 제5호를 발하여 통감부재판소령을 개정하여 통감부재판소를 조선총독부 재판소로 개칭하고 그 관할 등에 변경을 가하여 시행하였다. 여기에서는 고등법원 1개소(경성), 공소원 3개소(경성, 평양, 대구), 지방재판소 8개소(경성, 공주, 함흥, 평양, 해주, 대구, 부산, 광주) 및 동 지부 12개소, 구 재판소 68개소를 설치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4호를 발하여 재판소 조직을 개편하였다. 즉 조선고등법원 산하에 3종류의 재판소를 설치하고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 등의 3급제로 구분하고,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병치하였다. 그리고 재판사무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법원 지청을 설치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서 지방법원은 민사, 형사의 제1심 재판 및 비송사건에 관한 사무를 맡았고, 복심법원은 제 2심 재판을 맡았다. 고등법원은 복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고 및 항고사건과 재판소 구성법에서 정한 대심원의 특별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그리고 지

방법원에서는 판사 단독으로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소송물의 價額 1000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인사소송사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건 및 그 공범사건과 같이 특정 사건에 한하여 3인의 판사로 조직한 部에서 합의하여 재판하는 제도를 설치하였다.

1914년에는 지방법원출장소를 각지에 설치하여 등기와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삼았다. 당시 고등법원(경성) 외, 경성·평양·대구에 복심법원, 경성·대전·함흥·청진·평양·신의주·해주·대구·부산·광주·전주에 지방법원이 있었다. 사법기관의 특색은 사법권의 독립이 무시되고 총독에 직속되어 중앙행정부서의 하나로 편제됨에 따라 총독의 재량에 맡겨져 총독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하여 일제 초기 조선총독부의 지배기구가 대략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초기의 관제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크게 변화되었다. 일제 당국자들은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과거와 같은 무단적 통치 방식에서 유화적 통치로 스스로 변경하였다. 주된 방향은 조선인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문치적 방식으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1919년 8월 19일, 하라(原敬) 내각시대에 조선총독부관제의 획기적인 개정안이 공포되어,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시킴과 더불어 “총독은 천황에 직예하며 위임된 범위 안에서 육해군을 통솔하여 조선방비를 관장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安寧秩序의 保持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선에서 육해군의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관 출신자의 총독임용의 길을 열어놓았으나 실제로 등용된 예는 없다.

개정과 더불어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여 경무총감부와 각도 경무부 등도 폐지하고, 도지사가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 헌병분대, 분건소 때문에 경찰서를 두지 않았던 지방에도 경찰서와 주재소를 설치하였다.

총독부의 조직도 바뀌어, 종래의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를 내무국, 재무국, 식산국, 법무국의 4국으로 바꾸고, 종전 내무부에 부속한 학무국을 총독 직속의 국으로 승격시켰으며, 종래 독립관청이었던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본부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에 경무국을 두었다. 또한 총독관방의 총무국, 토목국, 철도국을 각각 서무부, 토목부, 철도부로 바꾸었다. 결국 총독부 본부는 다음과 같이 6국3부제로 되었다.

<표 4> 1919년 관제 개편 이후의 조선총독부 본부 기구

총독관방	비서과, 참서관실, 외사과 서무부(문서과, 회계과, 통계과, 임시국세조사과, 인쇄소) 토목부(토목과, 영선과) 철도부(감리과, 공무과)
내무국	제1과, 제2과, 관측소
재무국	세무과, 관세과, 사계과, 理財課, 전매과, 임시관세조사과
식산국	농무과, 산림과, 수산과, 상공과, 광무과
법무국	법무과, 감옥과
학무국	학무과, 편집과, 종교과
경무국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위생과

1920년 11월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식산국에 토지개량과를 신설하여 농업수리·토지개량·국유미간지 개척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이어 산미증식계획의 진전에 따라 1926년 6월 새로 水利課와 開墾課를 설치하고, 다시 1927년 5월 토지개량부를 신설, 위의 3과를 통할하였다. 그리고 종래 국유임야 사업을 산림과출장소·지방청·영림청 세 곳에서 나누어 관장함으로써 일어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1926년 6월 중앙기관으로서 山林部(林務課, 林産課, 造林課)를 신설하여 林政기관을 통일시켰다. 1932년 7월 27일 산림부와 토지개량부를 폐지하고 두 기관이 분장해 오던 업무와 식산국에 속했던 농림, 축산 업무 등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일괄 관장하는 농림국을 신설하였다.

1924년 12월 20일 ‘일반행정·재정정리 방침에 따라 본부 관제를 개정하여 칙령 제411호), 기구를 줄이고 동시에 본부와 소속관서의 인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였다. 우선 총독관방에 속한 서무부, 토목부와 監察官·鑑査官을 폐지하고, 서무부의 업무는 관방으로 토목부의 업무는 내무국으로 이관시켰다. 법무국의 기구도 축소하여 민사과와 형사과를 법무과로 통합, 감옥과의 감옥 업무를 소속 관서인 감옥으로 이관시키면서 형무소와 기출옥 및 출옥인 보호를 관장하는 行刑

課로 개칭하였다.

이렇게 해서 1925년도의 총독부 본부는 6국체제로 정비되어 제2기의 기본 골격을 갖추었고, 1932년에 산림부와 토지개발부를 통합하여 만든 농림국을 추가하여 1937년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소속관서에서 주요 변화는 세무감독국을 설치한 점이다. ‘제2차 세정정리’에 맞추어 1934년 4월 조선총독부세무관서관제(칙령 제 11호)를 공포하였다. 관서로는 경성·평양·대구·광주·합흥에 각각 세무감독국과 전국의 주요 지역 99곳에 세무서를 설치하였다. 세무감독국에는 서무과와 稅務部(直稅課, 間稅課), 경리부(징수과, 회계과)를 세무서에는 서무과와 직세과, 간세과를 각각 두어 1943년 11월 30일까지 세무업무를 관장하였다.

한편, 1937년 7월 7일 중국을 침략한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총동원체제로 재편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기구도 총동원체제에 적합하게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패전 때까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강제 동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총독으로 취임한 미나미(南次郎)총독은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4일전인 7월 3일 대대적인 인사 이동을 단행하는 한편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돌입하기 위한 기구 정비에 들어간다. 기구상의 주요변화를 국별로 보자.

1) 총독관방

1937년 9월 문서과에서 취급하던 자원조사와 총동원계획 사무를 분리하여 물자 동원계획·생산력확충계획 등 기획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과를 신설하였다. 1939년 11월 28일 자원과와 식산국의 임시물자조정과(1938.9.28, 물자의 수급과 조정)를 통합시켜 기획부를 신설하였다. 설치 당시는 3課였으나 이듬해 7월 1일 제4과가 설치되었다. 기획부는 국가총동원 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관한 종합사무, 시국에 긴요한 물자의 배급과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동원체제의 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39년 8월 2일 관방 소속의 외무부를 승격시켜 외무과와 척무과를 둔 외사부를 신설하였다.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발족되는 것을 계기로 학무국에서 관장하던 국민총동원 업무를 관방으로 이속시킴과

동시에 본부와 각도에 국민총력과를 신설하였다.

2) 식산국

1938년 5월 20일 광산과에서 관장하던 産金 업무를 분할하여 産金課를 신설하고, 9월 28일 상공과에서 액체연료의 자금 촉진과 수급 조절에 관한 사무와 광산과에서 석탄의 이용과 수급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연료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가격통제령 이후 관련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1940년 2월 30일 물가조정과를 만들고, 경기도·경상남북도·평안남도 각도에도 물가와 물자조정을 위한 1課를 신설하였다.

3) 농림국

1938년 8월 8일 ‘군수축산자원의 정비·확보와 銃後 농촌경제의 충실을 목표로 畜産課를 독립시켰다. 1940년 2월 3일 미곡과 잡곡의 생산가격·수량과 배급을 일원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미곡과(1936)를 糧政課·食糧調整課로 개정하여 미곡에 관한 기구를 강화하였다.

4) 경무국

1939년 2월 3일 防空과 消防·水防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防護課를 설치하였다. 당초 방공사무는 총독부 관방문서과에서 주관했으나 1937년 9월 자원과가 신설되면서 防空係를 두어 처리하였다. 이후 경무국 경무과에서 주관하던 消防·水防 사무와 통합하여 방호과로 독립한 것이다. 1943년 12월 경비과로 개칭하면서 경무과의 경위·경비사무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전시통제경제의 확대로 1938년 11월 경제경찰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경무과에 경제경찰계가 신설되고, 1940년 2월 3일 경제경찰과로 분리·독립하였다.

이밖에 1939년 7월 1일 학무국 소관의 관측소를 독립시켜 기상대로 개칭하고, 철도국에서는 1938년 6월 28일 工務課를 保線課(선로와 건조물·철도용지 관

리)·改良課(선로와 건조물 개량)로 분할하였다.

5) 법무국

법무국의 경우 1939년 12월 27일 법무과를 민사·형사 양과로 분할하여 분장하였다. 그리고 사상범을 감시하기 위해 1936년 12월 21일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소심사회 설치하였다.

1941년 11월 19일에는 厚生局을 신설하고, 내무국을 司政局으로 개조하는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다. 개편된 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정국 : (신설) 지방과·토목과(내무국에서 이관), 외무과·척무과(외사부에서 이관) 국민총력과(총독관방에서 이관)

식산국 : 상공과, 산금과, 연료과, 수산과, 전기제1과·제2과(체신국에서 이관), 물가조정과(기획부에서 이관), 鑛政課·특수광물과(광산과를 분리 개조)

후생국 : (신설) 사회과·노무과(내무국에서 이관), 위생과(경무국에서 이관), 보건과

기획부 : 계획과·물자조정제1~제3과(제1~제4과를 개칭)

그리고 1940년대에는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간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총독의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1942년 11월 1일 대동아성이 설치됨과 동시에 조선총독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다.(칙령 제727호, 제729호) 즉 종래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統理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거나 재가를 받게되었으나, 새로 “내무대신을 거쳐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한다”고 바뀌었다. 또한 내무대신은 총독에 대해 조선총독부에 관한 사무의 “통리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대만총독의 경우는 “통리를 위해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아가 일정한 주무사무에 대해 총리·내무대

신 이외의 각 대신도 감독할 수 있다고 정했다. 과거 어떤 대신에게서도 행정감독을 받지 않았던 조선총독이 처음으로 피감독자의 지위에 서게 된 것이다.

동시에 ‘행정합리화’라는 취지의 관제개정을 실시하여 후생국·기획부를 폐지하고 총무국을 신설하는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후생국과 기획부를 폐지한 것은 그동안 식민통치에 대해 조선총독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관례에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따라서 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기관의 통폐합과 관방의 기구 축소로 나타났다.

<표 5> 1942년 이후 조선총독부 기구의 변화

총독관방	비서관실, 인사과, 회계과
총무국	(신설) 문서과, 기획실, 정보과, 국민총력과, 검찰과, 국제조사과 (1943년 10월 조사과로 개칭)
사정국	지방과, 외무과, 사회과, 학무과, 토목과
식산국	물가과, 철강과, 산금과(1943년 5월 광업정비과로 개칭)
법무국	보호과 신설 (1942)
학무국	鍊成課, 편수과(편집과를 개칭)

1943년 중앙정부에 군수성·농상성·운수통신성이 신설되는 것에 맞추어 조선총독부도 12월 1일 대대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혁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식량의 증산, 지하자원 기타 군수물자의 개발증산, 육해수송력 증강, 징병 기타 이적 자원의 수탈을 위해 행정기구를 일원적 통합체제로 대폭 축소개편한 것이 개혁의 특징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무·사정·식산·농림·철도·전매의 6국을 폐지하고 광공·농상·교통의 3국을 신설하여 8국으로 개편하였다. 둘째, 식산국과 농림국의 사무를 대체로 農商局(식량확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생활관계의 사무의 일원적 처리)과 鑛工局(군수물자 증산에 필요한 물자동원계획, 전력, 목재, 도로, 노무 등의 사무의 일원적 처리)으로 분속하였다. 농림국의 사무 중 산림부문을 제외하고 새로 상공부문을 포함하여 농·수산·상업과 생활필수물자의 생산과 배급을 관장하는 農商局을 신설하였다. 셋째, 철도국, 통신국과 세관의 관제에 근본적인 개정을

가했다. 조선내의 만주국경 지점과 대일본항만에서의 연락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관기구를 교통수송의 담당기관과 통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세관관제를 폐지한 뒤 관세법 계통사무는 총독부 재무국으로, 기타 일체의 사무는 철도국으로 이관하였다. 동시에 육해수송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 종전의 조선총독부철도국을 중심으로 여기에 체신관서의 해사행정을 담당하는 부문과 항공 부문, 그리고 조선총독부 사정국의 항만토목을 담당하는 부문을 통합하여 조선총독부교통국 관제를 제정하고, 지방교통기구에 대해서도 이를 강화하였다. 넷째, 총독부의 토목사무의 일부를 도로 이관하고, 영림서를 도지사의 관할 아래 두었다. 도에서는 산업부와 식량부를 광공부와 농상부로 개조하였다. 또한 세제의 정비확립에 따라 1934년에 특설된 세무감독국을 폐지하고, 각지의 세무서는 직접 도지사의 관할 아래 두고, 도재무부를 부활하여 국세와 지방세 사무, 그리고 시국하의 회사경리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는 지방관청으로서 종합행정력을 강화하고 최대한 독립적인 지방의 각 관청을 폐지하여 이를 도지사의 지배 아래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읍면에 국가의 관리를 배치한 것도 이때문이다. 다섯째, 법무국에 보호과를 신설하였는데, 보호과는 보호관찰소, 예방구금소, 소년심판소, 교정원, 사법 보호 등의 업무를 맡았다. 보호과의 신설은 1941년 조선예방구금령이 공포되어 새로운 업무가 출현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4.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조직·기능 분석과 기록분류²¹⁾

1) 법무국의 조직 분석

조선의 사법행정을 통할하였던 법무국은 일본본국의 사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총독부의一局으로 설치되었다. 일제 초기에는 법무국이 아니라 사법부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사법 관련 업무는 1910년 9월 30일에

21) 이하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조직 변경 및 사무분장은 조선총독부시정연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사법부가 설치되었고 산하부서로는 서무과, 민사과, 형사과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1910년 10월 1일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업무가 결정되었다.

- 서무과 : (1) 사법부에 관한 문서의 접수, 발송 및 淨書
(2) 통계 및 보고 자료 수집
(3) 변호사
(4) 감옥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5) 부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민사과 : 민사 및 비송사건

형사과 : 형사, 검찰, 감옥, 은사 및 출옥인 보호

1912년 3월 27 일에는 사법부 서무과를 폐지하고 監理課를 설치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하였다. 이 당시에는 각 부서의 업무를 좀 더 세분하여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우선 민사과는 민사 및 비송사건 민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였고 형사과는 형사의 재판사무 및 검찰사무, 은사 복권 및 형의 집행, 범죄인 인도, 獄務 옥사 건설의 規劃 감옥의 경제 및 작업, 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범죄인 이동식별 업무를 맡았다. 새로 설치된 감리과는 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감옥의 설치 및 폐지, 변호사, 소송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조선인 변호사의 시험, 부내 타과의 主掌에 속하는 사항을 맡았다.

1915년에는 사법부 내의 부서를 축소 통합하여 민사과 형사과 감리과를 각각 법무과와 감옥과 2개 부서로 축소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선, 법무과는 ①민사, 형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형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 사무, ③검찰사무 ④범죄인 인도 ⑤恩赦, 복권 및 형의 집행 ⑥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구역 ⑦민적 ⑧변호사, 소송대리인 및 파산 관재인 ⑨부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맡았다. 감옥과는 ①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②범죄인의 異同 식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1919년 8월 19일에는 조선총독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법부를 법무국으로 개칭하고 1920년 8월 14일에 법무국을 민사과, 형사과, 감옥과로 개편하였다. 민사과에서는 ①민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 ③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④변호사 공증인 및 파산관재인 ⑤民籍 ⑥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맡았고 형사과에서는 ①형사, ②형사의 재판사무 및 검찰사무 ③은사 및 형의 집행 ④범죄인의 인도 업무를 맡았다. 감옥과에서는 ①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②범죄인의 異同 식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1924년 12월 25일에는 법무국을 법무과와 행형과로 다시 개편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법무과에서는 ①민사, 형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형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 ③재판소의 설치, 폐지, 관할 구역 ④변호사, 공증인 및 파산관재인 ⑤공탁 ⑥민적 ⑦검찰사무 ⑧恩赦 및 형의 집행 ⑨범죄인의 인도 ⑩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의 업무가 있었고 行刑課는 ①형무소 ②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③범죄인의 異同 식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체제는 1936년 12월 21일 법무과 업무에 <사상범 보호관찰>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큰 변화없이 194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41년에는 법무과 업무에 예방구금의 청구 사무, 예방구금의 재판사무, 예방구금위원회 업무를 그리고 행형과 업무에 예방구금소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1941년 6월 4일에는 행형과 업무에 형무직원공제조합을 추가하였다. 1941년 법무과 업무에 예방구금 및 예방구금위원회, 예방구금소 업무가 추가된 이유는 이 시기에 조선예방구금령이 공포되어 새로운 업무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1942년 4월 1일에는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를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 보호과로 개편하였다. 여기에서 민사과는 ①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②민사 및 비송사건 ③민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 ④조정 ⑤등기 ⑥호적 ⑦공증 및 파산관재인 ⑧공탁 ⑨변호사회 ⑩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형사과는 ①형사 ②형사사건의 재판사무 ③검찰사무 ④恩赦 및 형의 집행 지휘 ⑤범죄인의 양도 등을 담당하였다. 보호과는 ①보호관찰소 ②예방구금소 ③소년심판소 ④교정원 ⑤사범 보호 등의 업무를 맡았다. 1942년에 보호과를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새롭게 설치하여 다양한 업무를 추가한 것은 1930년대말에서 1940년대초반에 다양한 법령을 새롭게 공포하여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1943년 12월 1일에는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로 개편하였는데 총무과는 ① 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구역 ②형무소 및 형부관연습소 ③기출옥 ④범죄인의 異同 식별 ⑤사상범의 보호관찰 ⑥예방구금 ⑦소년의 심판, 교정 ⑧사범보호 ⑨형무직원공제조합 ⑩변호사 ⑪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민사과는 ①민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 ③조정 ④등기 ⑤호적 ⑥공증 ⑦공탁 등의 업무를 맡았고 형사과는 ①형사 ②형사사건의 재판사무 ③검찰사무 ④은사 및 형의 집행 지휘 ⑤범죄인의 인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내부 부서의 변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부서 변천

	조선총독부 법무국 부서			
	민사과	형사과	서무과	
1910(사법부)	민사과	형사과	서무과	
1912-1914	민사과	형사과	감리과	
1915-1919	법무과	감옥과	없음	
1920(법무국)	법무과	감옥과	없음	
1921-1924	민사과	형사과	감옥과	
1925-1939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40-1941	민사과	형사과	행형과	
1942	민사과	형사과	행형과	보호과

2) 법무국 기록물의 조직·기능별 분류

조선총독부 법무국 기록철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물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이 생산된 배경과 그 기록물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조선총독부의 기록철은 생산 맥락의 관점에서 하나의 논리적 질서를 부여해 주는 것이 타당한 분류법이 될 수 있다. 조선총독부 본부는 기록을 생산한 부서가 1938년을 기준으로 보면 1관방 7個局 35개과에 불과한 규모가 크지 않은 조직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분류

는 조직과 해당 조직의 기능에 기초한 분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조선총독부의 업무분장은 과 단위 수준까지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법무국의 경우에는 일부 기록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 법무국 各課의 係 단위 업무 분장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좀 더 상세한 업무 파악과 분류체계 수립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아래의 도표는 1930년의 법무국 법무과와 행정과의 세부 업무분장표이다.²²⁾

<표 7> 1930년 법무국 사무분장

과	계	계 단위 세부 업무분장
법무과	서무계	기밀에 관한 사항, 교제에 관한 사항, 변호사 및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항, 재판소 및 공탁국의 설치 폐지 및 관할에 관한 사항, 공중인 및 집달리 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법무과 주관 각종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법령 예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문서의 發受에 관한 사항, 관보 도서 잡지류의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인사계	局內 및 재판소 공탁국 직원의 신분 진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局內 및 재판소직원의 請暇 除服 出仕 관리복무기율에 의한 원출에 관한 사항, 局內 및 재판소 직원의 출장에 관한 사항, 재판소 직원의 사무분배에 관한 사항, 사법관시보실무시험 및 사법관후보자고시에 관한 사항, 봉급 예산 추산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장부 등 정리에 관한 사항
	경리계	경상비 예산의 편성 및 배부계획에 관한 사항, 新營費 예산의 편성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營繕에 관한 사항,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 봉급급여의 지불 기타 출납에 관한 사항, 물품의 평구 기타 용도에 관한 사항, 청사 및 관사에 관한 사항
	민사계	민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민사소송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 등기사무에 관한 사항, 호적사무에 관한 사항, 공중사무에 관한 사항, 집달리 사무에 관한 사항, 민사쟁송조정사무에 관한 사항, 공탁사무에 관한 사항, 기타 민사 및 비송사건에 관한 사항, 민사에 관한 예규의 정리에 관한 사항, 재판소 직원의 회의 훈시 보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형사계	형사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형사법규의 질의회답에 관한 사항

22) “기밀서류철(CJA0004067)”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형사재판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은사 복권 신청에 관한 사항, 사형집행에 관한 사항, 검사국 직원의 회의 훈시 보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검사국 직원의 복명서 정리에 관한 사항, 형사보고사건에 관한 사항, 공무원 및 중요범죄인명부 정리에 관한 사항, 형사에 관한 청원또는 투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간도 영사의 이송에 관계한 재판관보 지정에 관한 사항, 형사에 관한 예규의 정리에 관한 사항
	통계계	재판소 검사국 공탁국의 통계에 관한 사항
	통역계	통역에 관한 사무
행형과	서무계	주관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문서의 發受에 관한 사항, 형무소장 회동에 관한 사항, 감옥직원의 회의 훈시 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 감옥법령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감옥법규의 질의회답에 관한 사항, 당과에 속하는 예규 보고 도서 및 잡지의 정리에 관한 사항, 복명서에 관한 사항, 간수장의 임용고시에 관한 사항, 감옥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감옥 관입관의 진퇴에 관한 사항, 감옥직원의 상여 賜金 및 징계 下調에 관한 사항, 과 중 타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통계계	감옥통계에 관한 사항
	지문계	범죄인 異同 식별에 관한 사항
	감옥계	감옥의 설치 및 폐지 수용 구분에 관한 사항, 감옥공사의 계획에 관한 사항, 가출옥 및 가출장에 관한 사항, 형무보고에 관한 사항, 감옥참관에 관한 사항, 청원에 관한 사항, 수용 구금 戒護 및 상벌에 관한 사항, 敎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및 信書에 관한 사항, 영치에 관한 사항, 석방 및 사망에 관한 사항, 免囚保護에 관한 사항
	경리계	감옥예산에 관한 사항, 작업에 관한 사항, 급양에 관한 사항, 의무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위 표는 조선총독부 조직 중에서 최초로 各課의 계 단위 업무까지 소개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본부에서 조직 및 기능에 기초한 분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과 업무에 기초한 분류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앞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상세한 업무분장표에 입각한 기록분류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조직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조선총독부의 경우에는 1930년대말에서 1940년대에 전시동원 체제가 확립되면서 기구와 업무상의 변화가 보인다. 특히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업무분장을 보면 법무

국 업무가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국예산에 관한 첩(CJA0004171)>>을 살펴보면 1937년도 법무국의 업무 분장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1937년 법무국은 법무과와 행정과 2개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법무과 내부의 계 단위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과 정원표 제출 방법의 건(1937. 9. 14)>은 법무과 내의 각계의 현황과 업무분장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³⁾

<표 8> 1937년 법무과 업무분장표

과	계	계 단위 세부업무 분장
법무과	서무계	기밀, 교제에 관한 사무, 변호사, 변호사시보, 변호사회 및 변호사 시험에 관한 사무, 재판소 공탁국의 설치, 폐지 및 관할에 관한 사무, 공증인·집달리 직무취급자 및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
	인사계	법무국 및 재판소, 공탁국, 보호관찰소 직원, 雇員, 변호사직무촉탁의 신분 및 상여에 관한 사무, 局內 및 고등법원, 복심법원 각 감독관, 보호관찰소장의 請假, 徐服出仕, 관리복무기율에 의한 願出 및 출장에 관한 사무, 재판소 및 공탁국, 보호관찰소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무, 재판소 직원의 사무 분배에 관한 사무, 봉급예산 추산에 관한 사무
	경리계	局內 및 재판소, 공탁국, 보호관찰소의 예산 편성 및 배부 계획에 관한 사무, 營繕에 관한 사무(재판소 및 보호관찰소), 관유재산에 관한 사무, 局內 봉급 급여의 지불 기타 출납에 관한 사무, 局內 물품의 청구 및 보관에 관한 사무, 局內 청사, 관사에 관한 사무
	민사계	민사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무, 민사소송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에 관한 사무, 등기 호적 공증 집달리 민사소송조정 및 소작조정에 관한 사무, 공탁사무 및 공탁소 지정에 관한 사무, 기타 민사 및 비송사건에 관한 사무
	형사계	형사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무, 형사재판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무,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무, 은사, 복권의 신청에 관한 사무, 사형집행에 관한 사무,
	보호관찰계	보호관찰소의 설립, 폐지 및 관할에 관한 사무, 보호관찰소의 통제 및 감독에 관한 사무
	조사계	법무과 주관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및 기획에 관한 사무, 재판소 검사국 공탁국 및 보호관찰소의 통계에 관한 사무

23) “법무국예산에 관한 첩(CJA0004171)”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아래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7년과 1939년 법무과의 업무분담표를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937년에는 법무과 산하에 7개의 계가 있었으나 1939년에는 3개의 계로 통합되었으며 보호관찰계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표 9> 1939년 법무과 사무분담표

과	계	계 단위 세부업무 분장
법무과	민사계	민사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민사법규의 질의 회답에 관한 사항, 민사소송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 민사에 관한 청원 또는 투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기사무에 관한 사항, 호적사무에 관한 사항, 공증사무에 관한 사항, 집달리 사무에 관한 사항, 민사소송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소작조정사무에 관한 사항, 공탁사무 및 공탁국 지정에 관한 사항, 기타 민사 및 비송사건에 관한 사항, 민사예규의 정리에 관한 사항, 민사보고 사건에 관한 사항, 사법관 회동에 관한 사항, 법령 예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재판소 직원의 회의 훈시 보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관보 잡지류의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무과 주관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형사계	형사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형사법규의 질의 회답에 관한 사항, 형사재판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 검찰사무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은사 복권의 신청에 관한 사항, 사형집행에 관한 사항, 검사국 직원의 회의 훈시 보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검사국 직원의 복명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형사보고사건에 관한 사항, 공무원 및 중요범인명부 정리에 관한 사항,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간도 영사의 이송에 관계한 재판관할 지정에 관한 사항, 형사예규의 정리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계	보호관찰소의 설립 폐지 및 관할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소 통제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심사회의 통제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법령의 판정 개선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예규의 정리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법규의 질의 회답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소에 관한 보고 등의 정리 사항, 보호관찰소 보호사의 회동 타합에 관한 사항, 사법보호사업보조에 관한 사항, 사상범보호단체에 관한 사항, 법무과 주관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사법관 회동에 관한 사항, 법령 예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939년에는 법무국에 법무과와 행정과 2 개과가 있었는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24) “신규예산요구서철(CJA0004174)”

것은 법무과의 계 단위 업무분장 뿐이다. 그러나 행정과의 업무를 대략적이거나 알 수 있는 것은 1940년의 행정과 업무분장이다. 1940년에는 민사과, 형사과, 행정과 3개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1940년의 행정과 업무분장표를 1939년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행정업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는 있다. 1940년의 행정과 업무분장표는 다음과 같다.²⁵⁾

<표 10> 1940년 행정과의 업무 분장

과	계	계 단위 세부업무 분장
행정과	서무계	형무소의 설치 폐지 및 수용구분에 관한 사항, 법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형무소의 巡關에 관한 사항, 형무소 직원의 정원 배치에 관한 사항, 형무소 직원의 신분, 진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간수의 교양훈련에 관한 사항, 간수장 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 문서의 受發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형무 교무 보호계	재감자의 구금, 戒護, 및 석방에 관한 사항, 재감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재감자의 치우 및 情願에 관한 사항, 재감자의 수당금에 관한 사항, 형무소의 참관에 관한 사항, 형무소의 위생 및 의료에 관한 사항, 가출옥 및 假出場에 관한 사항, 재감자의 교훈 교육에 관한 사항, 사법보호에 관한 사항
	경리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재감자의 給養에 관한 사항, 형무소의 營繕 및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 형무소 수요 물품의 공동구입에 관한 사항
	작업계	형무작업의 기획 실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재감자의 직업훈련 및 작업장려에 관한 사항, 작업상여금에 관한 사항, 작업용 물자 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意匠 및 圖案에 관한 사항
	조사계	형무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통계에 관한 사항
	지문계	범죄인의 異動 식별에 관한 사항
	예방구금계	예방구금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예방구금소에 관한 제법 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예방구금소직원의 신분진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예방구금소 직원의 정원 배치에 관한 사항, 교도의 교양 훈련에 관한 사항, 교도관보 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 예방구금소의 巡關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구금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교화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급양 및 위생의료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퇴소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예방구금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예방구금에 관한 기타 사항

25) “예방구금관계조사서류(CJA0004216)”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1937년부터 1940년까지의 업무 분장의 변화는 법무국의 부서 변동과 각종 법무 행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9년까지는 예방구금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40년에 새롭게 신설된 것은 1940년부터 조선예방구금령이 1941년에 공포되어 법무국의 중요 업무가 되면서부터이다.

이상과 같은 업무분장표를 토대로 공문서 분류표를 개략적이거나 작성할 수 있다. 우선 조선총독부 본부의 공문서군을 레코드 그룹(대분류)으로 설정하면, 법무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능은 중분류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국의 각課는 소분류로 설정하고 계 단위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다양한 시리즈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분류는 5개 정도로 만들 수 있고 시리즈는 대개 약 58개 정도로 만들 수 있다. 법무국을 기준으로 하여 6개국으로 단순 확대하면 소분류는 30개 정도, 시리즈는 약 348개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척되면 법무국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본부의 모든 국에 대한 분류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더 나아가 조선총독부의 분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類-目-節 분류체계와의 비교도 일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표 11> 국가기록원 소장 법무 문서군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리즈
조선총독부 본부	법무	법무일반	인사, 통계, 각종 회의, 예·결산, 각종 예규, 법령, 회계 보고서, 비밀기록, 정보, 주간사무보고, 문서관리, 국·공유재산, 관사관리, 신영
		민사	민사사건, 비송사건, 재판소, 변호사, 공증사무, 파산, 호적, 등기사건, 소작조정, 민사조정, 집달리, 공탁, 사법관, 민사청원 및 투서,
		형사	형사사건, 검찰사무, 恩赦, 형사재판, 사무감독, 사행집행, 중요범인명부관리, 범죄인 인도, 간도 재판관할
		행형	감옥설치 및 폐지, 형무보고, 가출옥, 출옥인 보호, 범죄인 이동 및 식별, 수감자 훈련(형무작업, 교육), 예방구금소 설치, 예방구금소 수용자 관리, 교도훈련, 재감자 구급, 戒護, 석방, 재감자 관리
		보호	보호관찰소의 설립 및 폐지, 보호관찰소 통제 및 감독, 보호관찰심사회, 보호관찰소 보호사, 사법보호사업, 사상범 보호단체, 소년심판소, 교정원

현재 법무국 법무문서군은 약 240여권에 불과한 실정이다.²⁶⁾ 따라서 위 분류표에 해당되는 기록이 국가기록원에는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은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법무국 문서가 전체 생산된 것에 비해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240여권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수립한다면 업무분장표를 참고하면서 기록철을 분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법무과의 업무분장과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 기록철을 토대로 분류체계를 세우다 보면 조선총독부에 의해 업무상 생산되었으나 현재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지 않는 많은 수의 기록들을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집 대상을 선정하거나 수집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5. 맺음말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는, 공문서가 생산될 당시의 질서를 반영하여 조직함으로써, 해당 공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과 법무국의 업무분장표에 기초하여 대-중-소-시리즈-기록철의 순으로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철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기록물 분류의 적절성 여부는 ‘출처주의’, ‘원질서존중’ 등 기록관리 원칙을 얼마나 기록분류에 잘 반영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해당 조직과 기능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였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도서관의 사서와는 달리 대상 기관의 조직 연혁과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기록 시리즈의 발생 과정, 단위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각각 기록물들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기록의 맥락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술(記述)할 수 있는 기초

26) 국가기록원 법무국 문서에는 법무군과 행정군으로 나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법무군 문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위한 분류체계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기구와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과 사무분장수준의 조사보다는 係 업무분장표의 지속적인 발굴과 기록철의 증가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하게 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к с і